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홍남기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천재지변이나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업을 제외한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 납부 유예와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(안 제29조 제1항 제6호의2)

- 1)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

나.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납부유예 근거 마련(안 제30조제3항 신설)

- 1) 천재지변이나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함

다.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한시적 감경 근거 마련(안 제72조제3항 신설)

- 1) 천재지변이나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6. 25.~7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“소상공인”을 “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“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총괄청”을 “제1항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”으로, “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”을 “같은 호 단서 및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”로 한다.

6의2.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소상공인은 제외하며, 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이 경영하는 업종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: 1천분의 30 이상

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해당

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.

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9조제1항제6호 단서”를 “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”로 한다.

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9조제1항제6호 단서”를 “단서 및 제6호의2”로, “단서에 따라 산출”을 “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중 “제29조제1항제6호 단서”를 “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”로 한다.

제7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·제6항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9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 법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월 단위, 일 단 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하되, 제6호 단서 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 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		제29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 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~ 5. (생 략)	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6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<u>소 상공인</u> 이 경영하는 업종(「중 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제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: 1천분의 30 이상. 다만,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		6. ----- ----- <u>소</u> <u>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</u> <u>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		

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
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
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
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
용한다.

<신 설>

7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
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
가로 결정하고, 2차 연도 이후
기간(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
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

-----.

6의2.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
조에 따른 중소기업(소상공인
은 제외하며, 이하 “중소기업”
이라 한다)이 경영하는 업종
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
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
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
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제3조제1호의 재난, 경기침체,
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
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
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
경우: 1천분의 30 이상

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-----

다)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 다만,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.

⑦ ~ ⑨ (생략)

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 ①

· ② (생략)

<신설>

③ ~ ⑤ (생략)

제31조(사용료의 조정) 법 제33조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

----- 제1항
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에 따라

----- 같은 호 단서
및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
-----.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금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.

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제31조(사용료의 조정) -----

연도의 연간 사용료(제29조제1 항제6호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	X	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	연도의 연간 사용료(제29조제1 항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----- ----- ----- -----) 제72조(연체료 등의 징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X	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
제72조(연체료 등의 징수) ① · ② (생략) <신설>		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 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안 전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, 경 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 다.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152